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10 0개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역상생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 또는 예비지역상생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서 예비지역상생구역이 속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100개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자율상권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한다) 또는 예비자율상권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 사업체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 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조례의 제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포함될 관할 지역 내 활성화 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비율
2. 법 제3조에 따른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운영 목표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
5. 활성화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기본계획에 따른 활성화구역 운영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절차로 필요한 사항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
2. 제20조의 상권전문관리자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3. 상생협약은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가임대차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상인, 임대인 등 간에 체결할 것. 다만, 예비 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지역상 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생협약에 참여시킬 것
② 상생협약 체결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상생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다만, 변경된 명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2조제2호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점포의 수 또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 받은 면적 범위를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 하기 위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

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예비지역상생구역내 상인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개요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신청에 대하여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및 상가건물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를 받은 대표자 1명을 해당 토지 및 상가건물 소유자로 본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 는 각각을 소유자 1명으로 본다.
⑥ 지역상생구역 지정에 대해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등이 동의하거나 동의 를 철회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상가건물 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지역상생구역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협의체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것
2. 자문 결과는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원, 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 역의 구성원에게 알리고 공개할 것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예비지역상생구역 점포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 로 구성하고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군·구의 공무원
2.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협의체의 전문가 위원 위촉시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⑤ 협의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협의체장 선출 전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7조제1항을,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 절차는 제7조제2항을, 법 제15조제9항의 “동의자수 산정 등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상생구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예비지역상생구역”은 “예비자율 상권구역”으로 본다.

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자율상권구역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제12조(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을 두고, 준비위원회 구성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2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상권구역 신청 및 자율상권조합설립을 위한 예비자율상권구역대상인등의 의견 청취
2. 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 안 작성
3. 법 제2조제4호의 요건 확인 및 활성화구역 지정시 타당성·효과성 분석 등을 포함한 예비자율상권구역 기초조사
4. 자율상권구역 지정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5.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⑧ 자율상권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상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시행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의 범위 및 회계
3. 사업 비용 부담 방식
4.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5. 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이사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 절차
8.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의 명칭
2. 자율상권조합의 소재지를 자율상권구역이 속한 행정동 내에서 변경하는 사항
3. 자율상권조합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업무범위

제19조(자율상권조합 사업의 지원범위와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법 제17조의 빈집포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2.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지원
 3. 자율상권구역의 디지털화 지원
 4. 지역특화상품 개발, 디자인, 판로지원, 홍보 등 공동사업
 5. 축제·행사 개최 등 판로 촉진 및 상권 홍보
 6. 교육·경영 지원
 7.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 ② 법 제23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를

‘협동조합’과 제17조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율상권조합으로 본다.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
2.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것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자체제원 조달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2. 정관 내용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중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자율상권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⑦ 시장·군수·구청은 자율상권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자율상권조합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 ① 법 제24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9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조합원”이란 활성화구역 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2 이하를 말한다.
- ③ 상권 전문관리자에 관하여 등록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표1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관리자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의 상권전문관리자 양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8조에 따른 활성화구역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1 제2호에 따른 시설물 중 판매시설,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항 및 별표1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활성화구역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1을 따른다.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2항의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3. 그 외 상권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거나 지방자치

을 포함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사전 사업조정 협의 및 심의 요청서
2. 다음 각 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에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영업 점포의 위치도
다. 영업의 규모(매장면적, 종사자수 등)
라. 업종
3. 지역협력 계획서(지역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사전 사업조정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지역상생협의체 협의결과와 함께 지역상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의견
- ③ 지역상권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업종제한 심의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1. 지역상생구역에서 해당업종의 보호 필요성
2. 해당업종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④ 지역상권위원회는 제한업종 영업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의 범위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종의 영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역상권구역영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종의 영업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지원기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한다.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② 법 제30조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지원신청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4조(업종 제한)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제3호의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된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지역상생협의체 협의결과와 함께 지역상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의견
- ② 지역상권위원회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업종제한 심의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1. 지역상생구역에서 해당업종의 보호 필요성
2. 해당업종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③ 지역상권위원회는 업종제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의 범위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 내에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영업 및 시설
2.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기간
3.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하는 사유
4. 그 밖에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업종 제한 대상 등록) ① 지역상생구역에서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제28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율상권조합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현금흐름표
4. 주석(註釋)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자율상권조합 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관계없이, 즉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법 제36조제1항제1호 내지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의 취합 및 현황관리
2.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6조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 자격(법 제26조 및 영 제21조 관련)

1. 기관의 자격

-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學校)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교육 실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 가. 지정일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에 상권(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이 포함된다. 이하 “상권”이라 한다.)의 상인 및 각 부처 상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및 5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
나. 지정일 바로 전 3년동안 상권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00명 이상의 교육·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38조 및 영 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0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천원)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조	1,000	5,000	10,000
2.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법 제14조, 제17조	1,000	5,000	10,000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인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18조 제2항	1,000	5,000	10,000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24조 제2항	1,000	5,000	10,000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법 제31조	1,000	5,000	10,000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1,000	5,000	10,000

별첨

지역상권법-시행령 전문(비교표)

법	시 행 령(안)	비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u> 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u>임대료</u> 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릴 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u> 을 충족하는 곳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100개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역상생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서 예비지역상생구역이 속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법	시 행 령(안)	비고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u> 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u>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u>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100개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자율상권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한다)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 사업체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법	시 행 령(안)	비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율상권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중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기본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상권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안)	비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		

법	시 행 령(안)	비고
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관한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u>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례의 제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포함될 관한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비율 2. 법 제3조에 따른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운영 목표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 5. 활성화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기본계획에 따른 활성화구역 운영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절차로 필요한 사항	
제10조(상생협약) ①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한다)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u>상생협약</u>(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 2. 제20조의 상권전문관리자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법	시 행 령(안)	비고
	3. 상생협약은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가임대차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상인, 임대인 등 간에 체결할 것. 다만,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생협약에 참여시킬 것 ② 상생협약 체결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2.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생협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생협약의 체결을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법률적·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	시행령(안)	비고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상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u>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u>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상생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다만, 변경된 명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2조제2호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점포의 수 또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 받은 면적 범위를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법	시행령(안)	비고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u> 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예비지역상생구역내 상인들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개요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신청에 대하여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제6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및 상가건물 소유권을 여러	
⑨ 그 밖에 <u>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법	시행령(안)	비고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명을 해당 토지 및 상가건물 소유자로 본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소유자 1명으로 본다. ⑥ 지역상생구역 지정에 대해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들이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 철회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상가건물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u>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이하	

법	시행령(안)	비고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지역상생구역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주소 3.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 계획 ③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제31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한받는 영업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4.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지역상생협의체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u> 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u>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협의체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u>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것 2. 자문 결과는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원, 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의 구성원에게 알리고 공개할 것	

법	시행령(안)	비고
⑤ 그 밖에 <u>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예비지역상생구역 집포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로 구성하고 예비지역상생구역 내상인등 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군·구의 공무원 2.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협의체의 전문가 위원 위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⑤ 협의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기 협의체장 선출 전에 협의체 의의를 개회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5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7조제1항을,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 절차는 제7조제2항을, 법 제15조제9항의 “동일자수 산정 등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상생구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예비지역상생구역”은 “예비자율상권구역”으로 본다.	

법	시행령(안)	비고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u>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제원조달 및 운영방안이 타당할 것 4.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및 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u>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제6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u>⑨ 그 밖에 동일자수의 산정방법 등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법	시행령(안)	비고
제1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상권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율상권조합이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2. 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참여 기피,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지정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자율상권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u>자율상권구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자율상권구역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제17조(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안)	비고
②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준비위원회 구성의 위치 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3.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u>④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제12조(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을 두고, 준비위원회 구성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①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2. 그 밖에 <u>자율상권구역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업무 ②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사용한 경비내용을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	제13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 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상권구역 신청 및 자율상권조합설립을 위한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의견 청취 2. 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 안 작성	

법	시 행 령(안)	비고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상권조합에 보고·인계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자율상권조합이 포괄승계한다.	3. 법 제2조제4호의 요건 확인 및 활성화구역 지정시 타당성·효과성 분석 등을 포함한 예비자율상권구역 기초조사 4. 자율상권구역 지정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5.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u> 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u>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제1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u>법 제1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u> 이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협동조합’과 제17조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율상권조합으로 본다. ② <u>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 2.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 추었을 것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2. 정관 내용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법	시 행 령(안)	비고
제20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자율상권조합이 조합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자율상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u>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및 자율상권조합의 해산·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u>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u>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중기부장관 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	시 행 령(안)	비고
	⑦ 시장·군수·구청은 자율상권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⑧ 자율상권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정관기제사항) ①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5. 그 밖에 <u>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시행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시행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의 범위 및 회계 3. 사업 비용 부담 방식 4.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5. 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이사회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 절차 8.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u>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경미한 사항</u>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의 명칭 2. 자율상권조합의 소재지를 자율상권구역이 속한 행정동 내에서 변경하는 사항 3. 자율상권조합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업무분위	

법	시 행 령(안)	비고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상인 2. 자율상권구역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경영지원 사업 4. 환경·영양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u>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 사업의 지원범위와 절차) ① <u>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전통시장법 제17조의 민질포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2.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지원 3. 자율상권구역의 디지털화 지원 4. 지역특화상품 개발, 디자인, 판로 지원, 홍보 등 공동사업 5. 축제·행사 개최 등 판로 촉진 및 상권 홍보 6. 교육·경영 지원 7.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법	시행령(안)	비고
	② 법 제23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意的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자율상권조합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u>(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u> 할 수 있다. ② 상권 전문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 ① <u>법 제24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u> 1.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9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법	시행령(안)	비고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조합원”이란 활성화구역 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2 이하를 말한다. ③ 상권 전문관리자에 관하여 등록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 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 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표1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제2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을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u> 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시행령(안)	비고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관리자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상권전문관리자 양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별 등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별)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별) 활성화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u>에 따른다.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특별) ① <u>법 제28조에 따른 활성화구역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1 제2호에 따른 시설물 중 판매시설,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항 및 별표1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로 한다.</u>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활성화구역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1을 따른다.	

법	시행령(안)	비고
제29조(은누리상생권 가맹점 특별) ①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용자 3.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용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임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u>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u>법 제30조제2항의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을 말한다.</u>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3. 그 외 상권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② 법 제30조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지원신청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1조(임종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u>	제24조(임종 제한) ① <u>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u> ② <u>법 제31조 제1항제3호의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된 가</u>	

법	시행령(안)	비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u>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u>가 <u>운영하는 지역점</u>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인본부가 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u>해 다.	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영업 제한 협의 및 심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지역상생협의체 협의결과와 함께 지역상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의견 - 지역상권위원회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업종제한 심의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 지역상생구역에서 해당업종의 보호 필요성 - 해당업종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지역상권위원회는 업종제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의 범위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 내에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해당 영업 및 시설 -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기간	

법	시행령(안)	비고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제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u>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제에 대한 협의 결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하는 사유 4. 그 밖에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영업 제한 대상 등록) ① 지역상생구역에서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사전 사업조정 협의 및 심의 요청서 - 다음 각 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 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영업 점포의 위치도 다. 영업의 규모(매장면적, 종사자 수 등) 라. 업종 3. 지역협력 계획서(지역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사전 사업조정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지역상생협의체 협의결과와 함께 지역상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의견 - 지역상권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업종제한 심의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 지역상생구역에서 해당업종의 보호 필요성 - 해당업종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지역상권위원회는 제한업종 영업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의 범위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법	시행령(안)	비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종의 영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역상권구역영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종의 영업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전문지원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u> 할 수 있다.	제27조(전문지원기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u> 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원		
2.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업무의 지원		
3. 활성화구역 사업계획의 작성 지원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지역상생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안)	비고
관계 기관·단체·조합 등의 장에게 자율상권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u>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율상권조합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현금흐름표 - 주석(註釋)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자율상권조합 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관계없이, 즉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법 제36조제1항제1호 내지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u>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u> 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한다.	
	-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현황관리 -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 법 제26조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법	시행령(안)	비고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자율상권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인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인가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제37조(양벌규정)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그 자율상권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율상권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법인·기관·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등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 법인 등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법	시행령(안)	비고
케슬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科)하지 아니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인계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입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툼없음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1]

상권전문관리자 교육기관 자격(법 제26조 및 영 제21조 관련)

1. 기관의 자격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學校)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교육 실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가. 지정일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에 상권(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이 포함된다. 이하 “상권”이라 한다.)의 상인 및 각 부처 상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및 5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

나. 지정일 바로 전 3년동안 상권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00명 이상의 교육·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43 -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38조 및 영 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0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제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천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조	1,000	5,000	10,000
2.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법 제14조, 제17조	1,000	5,000	10,000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인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18조 제2항	1,000	5,000	10,000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24조 제2항	1,000	5,000	10,000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법 제31조	1,000	5,000	10,000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1,000	5,000	10,000

- 44 -